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실태와 경찰의
피해자 보호대책 개선방안**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실태와 경찰의
피해자 보호 대책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연구관 유지웅

<제 목 차 례>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
| 제2절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 3 |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 4 |
| 제1절 가정폭력의 개념 | 4 |
|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개념 | 4 |
| 2. 가정폭력의 개념정의 | 5 |
| 제2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 6 |
| 제3장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실태 분석 | 9 |
| 제1절 다문화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9 |
| 제2절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 | 15 |
| 1. 조사주체별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실태 조사 | 15 |
|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식 조사 결과 | 21 |
| 3. 경찰·상담소 신고 후 만족도 조사 | 23 |
| 4. 다문화가족 부부의 이혼 실태 | 24 |
| 제3절 다문화가족의 부부갈등 요인 | 26 |
| 1. 다문화가족 내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 26 |
| 2. 여성의 상품화 | 28 |
| 3. 언어문제 | 28 |
| 4. 가족들과의 관계 | 29 |
| 제4절 다문화가족에서의 가정폭력의 형태 | 31 |

| | |
|---------------------------------------|----|
| 1. 신체적 폭력 | 31 |
| 2. 사회적 고립을 통한 폭력 | 33 |
| 3. 성적 폭력 | 34 |
| 4. 정서적 폭력 | 35 |
| 5. 경제적 폭력 | 36 |
| | |
| 제4장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현황 | 37 |
| 제1절 정부의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정책 | 37 |
| 1.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대책 | 40 |
| 2. 다문화가족 지원대책 개선방안 | 42 |
| 3. 인권교육 | 44 |
| 제2절 정부의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체계 현황 | 44 |
| 1. 여성 긴급전화 <1366> | 44 |
| 2. 가정폭력상담소 | 46 |
| 3. 보호시설 | 46 |
| 4. 법률구조기관 | 47 |
| 5. 의료기관 | 47 |
| 6. 수사기관 | 48 |
| 7. 사법기관 | 48 |
| 제3절 가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경찰의 지원체계 현황 | 49 |
| 1. 가정폭력전담반 설치 운영 | 50 |
| 2. 여성청소년계 설치 | 50 |
| 3. ONE-STOP 지원센터 운영 | 51 |
| 4. 여성아동청소년 경찰지원센터 운영 | 51 |
| | |
| 제5장 다문화가족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피해자 보호대책 | 52 |
| 제1절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경찰의 역할 | 52 |

| | |
|--|----|
| 1. 응급조치 | 53 |
| 2. 임시조치 여부 판단 | 54 |
| 3. 검찰청 송치 | 54 |
| 제2절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조치 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 55 |
| 1. 법률·제도적 차원 | 55 |
| 2.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활동 차원 | 58 |
| 제3절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피해자 보호대책 개선방안 | 60 |
| 1. 법·제도 개선 차원 | 60 |
| 2. 피해자 지원활동 개선사항 | 64 |
| 제6장 결론 | 67 |
| <참고문헌> | 69 |

<표 차례>

| | |
|--|----|
| <표 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1990-2007년) | 11 |
| <표 2>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 | 12 |
| <표 3>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 | 13 |
| <표 4>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수 | 14 |
| <표 5> 조사주체별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발생률 조사결과 비교 | 19 |
| <표 6> 가정폭력 경험 유무 조사(이한동 조사) | 20 |
| <표 7> 조사주체별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 후 외부기관 신고률 조사 비교 | 23 |
| <표 8> 최근 5년간 다문화가족의 이혼 현황 | 25 |
| <표 9> 현행 결혼이민자 통합 정책: 7개 정책과제와 26개 단위과제 | 39 |
| <표 10> 가정폭력전담 경찰관 활동 현황 | 50 |
| <표 11> 여성청소년계 설치 현황 | 51 |
| <표 12>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 | 59 |

<그림 차례>

| | |
|---|----|
| <그림 1> 2007년 농림어업 종사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 | 14 |
| <그림 2> 가정보호사건 처리과정 | 53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국제결혼은 지구화 추세와 함께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가족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2007년의 18년 동안 국제결혼 건수는 총 318,936건이다. 이 기간 동안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총 219,290명이고,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99,646명이다. 1994년까지만 하여도 국제결혼에서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더욱 많았으나, 1995년 이후에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등 동남아 국적의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것은 국제결혼을 ‘이주를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공급자의 요구와 자국내 결혼시장에서 상대를 찾을 수 없는 남성들의 수요가 결합된 결과이다.¹⁾

1) 국제결혼의 수요는 인구학적으로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인구분포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인구구조의 불균형은 결혼적령기 인구의 성구조 불균형을 의미한다.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간 혼인 적령기 남녀 인구간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인구이동은 특별히 농촌에서 도시로 진행되어 왔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이동이 많아 남녀간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농촌 여성들의 이동현상이 지속되면서 농촌에서의 젊은이들의 성 구조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아지는 비대칭형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결혼적령기에서 미혼 남녀간의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난다.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 외에도 여성의 고학력화, 경제활동 참여 인구의 증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그 지위가 낮은 남성들은 외국에서 결혼 상대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이삼식 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결혼·출산 형태와 정책방향』, 한국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영향으로 아시아에서 “이주의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아시아의 여성들이 노동자로, 성산업 서비스 종사자로, 때로는 국제결혼 당사자로서 이주를 한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여성들의 이주현상은 경제적인 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려는 동기보다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이주가 더욱 큰 동기가 되고 있다. 한국에 오는 결혼이주여성들도 자신의 본국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도 경제적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과 기대를 가지고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다. 보다 나은 삶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한국행을 희망하는 아시아 여성들이 공급자의 위치에서 있는 한편에는 아시아 여성들을 요구하는 국내 한국남성들의 수요가 있다. 국내에서의 성비의 불균형과 고학력여성들의 결혼 기피현상 등으로 국내 결혼시장에서 결혼상대를 찾지 못한 남성들이 그 수요자들이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라 이루어진 국제결혼은 대부분 매매혼의 성격을 띤다. 한국 남성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이주여성의 본국 가족들에게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이주여성을 아내로 맞는다.

지난 2007년 7월 대전에서는 열아홉 살 베트남 신부가 갈비뼈 18개가 부러지도록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으며, 전처와 위장 이혼하고 씨받이를 구하는 한국남성에게 속아 아이만 낳아주고 이혼당한 결혼이주여성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최근 다문화가족 내에서의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는 한국에서 인종적 특성, 성별, 경제적 빈곤, 언어소통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한국 사회 내에서 다중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수자집단(Minorities)이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 늘어나는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변화의 한 현상이라고 할 때, 가정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은 국가와 법에 의해

지지와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²⁾

가정폭력 범죄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주체는 경찰이다.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추후 사건의 확대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찰이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제2절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에서의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이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 실태를 분석하고, 다문화가족 가정폭력을 막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검토한 후, 특별히 경찰의 활동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방법과 전문가자문에 기초해 있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조사에 기초하여 진행하였다. 특별히 결혼이주여성 관련 통계는 통계청 혼인통계와 인구동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는 관련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각종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결과에 기초해 분석하였다. 결혼이주여성 지원체계와

2) 김민정,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정책 효율성 검토”, 『정부의 결혼이민자가족정책 다시보기 토론회 자료집』, 2006, 48쪽.

관련해서는 기존 문헌자료 외에도 보건복지가족부 부처 담당자와 경찰청 담당자, 이주여성인권단체 관계자 등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상의 개념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제2조 제1호)로 정의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정구성원에는 ① 현재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이거나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 친자 관계 포함)이거나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③ 계부모의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 등을 포함(제2조 제2호)하는 광의적인 개념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범위에 있어서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광의적이고 포괄적인 폭력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 협박, 명예훼손과 모욕,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죄 등 총 11개에 달하는 행위유형이 ‘가정폭력범죄’로 규정되고 있다(제2조 제3호). 이러한 광의적인 개념 규정은 학계 일반에서의 가정폭력 개념에 대한 이해와 그 맥을 같이한

다.

2. 가정폭력의 개념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영문상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Domestic Violence’로 지칭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Home Violence’, ‘Family Violence’ 등이 있는데, ‘Home Violence’는 가정의 의미보다 집이라는 장소적 개념이 강조되어 집밖에서 벌어지는 가족구성원들간의 폭력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Family Violence’는 한 집에 거주하는 가족이라는 의미에 한정시킴으로써 전 배우자에 의한 폭력은 포함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가정폭력은 Home의 개념과 Family의 개념을 포함하는 ‘Domestic Violence’로 지칭된다.³⁾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가부장제 개념 속에서 정의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대부분 “가정폭력이 여성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학대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가부장제 테러리즘에 그 본질이 있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를 반영한 개념규정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채택한 개념정의와 UN인권위원회의 개념정의에서 나타난다. 캐나다 토론토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에 대해 시도했거나 야기한 폭행·성폭행, 위협·협박, 범죄성 괴롭힘,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불법적 간섭(강제 감금 등), 기타 범죄행위로서 신체적·성적·정신적 피해를 가한 행위로, 상대방을 지배·통제하여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강압적이고도 위협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⁴⁾ 또한 UN인권위

3) 이밖에도 가정폭력과 관련된 유사 개념으로서, 아내구타(wife battering/beatng), 구타당하는 아내(battered women/wives), 학대당하는 아내, 학대당하는 부인, 매 맞는 아내, 아내학대(wife abuse), 아내폭행(wife assault), 부부폭력(marital/conjugal violence), 배우자 학대(spouse abuse), 가부장적 테러리즘(patriarchal terrorism)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된다.

4) 김수율, 『가정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0쪽.

원회의 여성인권 관련 보고서는 “가정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배우자가 종속적 위치에 있는 배우자를 위협·조종하거나 강요할 목적으로 신체적·심리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폭력 개념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 내에서 한국 남성이 배우자인 외국인 여성에게 행사하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언어적·성적·경제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제2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여성 이주집단에 관한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내외에서 이뤄져 온 여성 이주집단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 하나는 여성이 남성의 가족으로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노동력으로서 출신국가와 이주국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여성의 이주가 과연 여성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성의 이주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고조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주하는 여성들의 규모와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출신국가와 이주국가가 크게 다양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 여성 이주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이라고 개념지우고 있다.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여성의 이주 원인을 규명하기 위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서 사센(Sassen)은 세계화라는 불균등 발전 속에서 국가-노동시장간의 관계로 ‘이주의 여성화’를 설명한다. 즉, 선진국 내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서비스산업 내 직종의 다양화로 저기술, 저임금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어 내국인이 기피하는 특정 서비스 부문으로 제3세계 여성들이 유입된다고 보았다.

한편, 여성의 이주는 출신국과 이주국의 가부장제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감버드(Gamburd)는 외국으로의 여성 이주가 출신국과 이주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성별관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연구는 선진국으로의 여성 이주가 그 사회에서 새로운 성별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데 회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흑쉬드(Hochschild)는 이주여성이 담당하는 서비스 노동은 선진국의 여성의 지위변화로 인해 발생한 ‘돌봄의 소진’에 대응하는 것이며, 이주여성이 종사하는 가정부, 보모, 간병인, 성매매 등의 활동은 감정적 헌신과 친밀성이 상품화되어 새로운 제국주의적 관계를 맺는 영역에 위치한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가난한 국가의 여성과 경제적으로 잘사는 국가의 남성과의 결합이라는 특정한 유형의 국제결혼은 여성이주의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잡아, 이주여성은 간병, 보육 등의 사회노동도 담당하지만, 동시에 부인과 어머니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파이프와 로체스(Piper & Roces)는 일본에 공장노동자나 유흥업종사자로 왔다가 일본 남성과 결혼하는 필리핀 이주 여성의 사례를 통하여, 이주 경로로서 노동과 결혼이 연결되어 있으며, 어머니, 부인의 역할과 노동자의 역할이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⁵⁾

한편 국내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들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⁶⁾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

5) 김현숙,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유형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7, 6-8쪽.

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연구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주여성지원단체들에서도 이들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 왔다. 이주여성지원단체에서의 연구는 크게 국제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관한 연구들과⁷⁾ 가정폭력 사례에 관한 연구⁸⁾가 중심이 되어 결혼이주여성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알리는 데 주력해 왔다.

한편 학계에서도 사회학, 여성학, 인류학 등의 학문영역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석사학위 논문으로 다룬 연구주제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⁹⁾,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여성의 생애사¹⁰⁾, 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적응¹¹⁾,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¹²⁾,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¹³⁾ 등

-
- 6) 이러한 연구로는 김애령, 『충남거주 조선족 여성의 결혼가정과 적응에 관한 연구』, 광주여성정책과, 1998; 서영주, “강원지역 외국인 주부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외국인 주부 복지증진을 위한 토론회』, 2001; 민경자, 『충남 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 이윤애, 「결혼으로 이주한 외국인여성의 정착지원방안」, 전국여성단체연합 성과인권위원회, 『전북지역 이주여성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자료』, 2005 등이 있다.
- 7) 이러한 연구로는 이금연,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 『국제결혼과 여성 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 원탁토론회』,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WeHome, 2003; 최근정, “우편주문신부 그 현황과 성매매로서의 의미”, 『국제 성매매근절 운동팀 강연회 자료집』, 2003; 석원정,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 사단법인 인천 여성의 전화 본회 10주년 및 여성주간 기념 이주여성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자료집, 『여성과 이주현실』, 2004 등이 있다.
- 8) 이러한 연구로는 광주발전연구센터, 『외국인주부 실태조사』, 2003; 위 흠, “국제결혼과 여성 성폭력에 관한 정책 제안 원탁토론회”,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2003 등이 있다.
- 9) 홍기혜,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대석사학위논문, 2000.
- 10) 신란희, 「국제 결혼 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 11) 하 밍 타잉,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탄티튀히엔, 「국제결혼 베트남 이주여성의 현실과 적응-메콩델타지역 농촌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2) 노하나,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2007.
- 13) 안현주, 「한국남성과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대응-여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이한동,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과 정신건강-스트레스와 우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이 있고,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는 이주여성의 부부갈등¹⁴⁾ 등이 있다.

학위논문 외에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에는 전라도지역 한국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적응과 갈등¹⁵⁾, 국제결혼 이주현황과 가족문제에 대한 연구¹⁶⁾, 한국남성과 결혼한 아시아 여성의 입장에서 결혼이주의 딜레마적 상황과 선택의 문제에 관한 연구¹⁷⁾ 등이 있다.

이 연구의 주제인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안현주(2006)의 석사학위논문인 한국남성과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대응에 관한 연구와 이한동(2007)의 석사학위논문인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가 있다. 안현주의 연구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14명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결혼이주여성의 대응방식을 논의하고 있고, 이한동의 연구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문제를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제3장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실태 분석

제1절 다문화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4) 김오남,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5) 윤형숙,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2004; 윤형숙,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여성학회 10월 심포지엄 발표 논문, 2004.

16) 이해경,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2005.

17) 김민정·유명기·이해경·정기선,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2006.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18년 동안 이뤄진 국제결혼 건수는 총 318,936건이다. 이 기간 동안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총 219,290명이고,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99,64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1994년까지만 하여도 국제결혼에서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더욱 많았으나, 1995년 이후에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2003년 이후부터인데, 그 원인은 국내적으로는 인구학적으로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인구분포의 불균형에 기인한 한국남성들의 국제결혼의 수요와 함께 경제적 지위 상승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외국으로 이주하는 동남아 여성들의 공급요인이 존재하는 마당에 이러한 수요와 공급 요인에 기대어 난립한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기인한 것이다.¹⁸⁾

통계청 결혼통계결과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총 결혼건수 345,592건 중에서 국제결혼이 38,491건(11.1%)이었는데 그 중 75.7%(29,140건)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었고, 나머지 24.3%(9,351건)은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었다.¹⁹⁾

18) 한건수·설동훈, 『결혼중개업체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06.

19) 그러나 국제결혼자 통계는 한국에 입국 당시 체류 자격을 기초로 한 통계일 뿐으로 실제 국제결혼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노동이주와 결혼이주의 구분은 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노동 이주한 여성이 목적국의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나 결혼이주를 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혼하게 발견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이선주, 『국제노동이주와 젠더: 배제와 제한된 포용』, 2006).

<표 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1990-2007년)

| 연도 | 총혼인건수 | 국제결혼 | | 외국인아내 | | 외국인 남편 | |
|-----------|-----------|---------|------|---------|-----|--------|-----|
| | | 건수 | % | 건수 | % | 건수 | % |
| 1990 | 399,312 | 4,710 | 1.2 | 619 | 0.2 | 4,091 | 1.0 |
| 1991 | 416,872 | 5,012 | 1.2 | 663 | 0.2 | 4,349 | 1.0 |
| 1992 | 419,774 | 5,534 | 1.3 | 2,057 | 0.5 | 3,477 | 0.8 |
| 1993 | 402,593 | 6,545 | 1.6 | 3,109 | 0.8 | 3,436 | 0.9 |
| 1994 | 393,121 | 6,616 | 1.7 | 3,072 | 0.8 | 3,544 | 0.9 |
| 1995 | 398,484 | 13,494 | 3.4 | 10,365 | 2.6 | 3,129 | 0.8 |
| 1996 | 434,911 | 15,946 | 3.7 | 12,647 | 2.9 | 3,299 | 0.8 |
| 1997 | 388,591 | 12,448 | 3.2 | 9,266 | 2.4 | 3,182 | 0.8 |
| 1998 | 375,616 | 12,188 | 3.2 | 8,054 | 2.1 | 4,134 | 1.1 |
| 1999 | 362,673 | 10,570 | 2.9 | 5,775 | 1.6 | 4,795 | 1.3 |
| 2000 | 334,030 | 12,319 | 3.7 | 7,304 | 2.2 | 5,015 | 1.5 |
| 2001 | 320,063 | 15,234 | 4.8 | 10,006 | 3.1 | 5,228 | 1.6 |
| 2002 | 306,573 | 15,913 | 5.2 | 11,017 | 3.6 | 4,896 | 1.6 |
| 2003 | 304,932 | 25,658 | 8.4 | 19,214 | 6.3 | 6,444 | 2.1 |
| 2004 | 310,944 | 35,447 | 11.4 | 25,594 | 8.2 | 9,853 | 3.2 |
| 2005 | 316,375 | 43,121 | 13.6 | 31,180 | 9.9 | 11,941 | 3.8 |
| 2006 | 332,752 | 39,690 | 11.9 | 30,208 | 9.1 | 9,482 | 2.8 |
| 2007 | 345,592 | 38,491 | 11.1 | 29,140 | 8.4 | 9,351 | 2.7 |
| 1990-2007 | 6,563,208 | 318,936 | 4.9 | 219,290 | 3.3 | 99,646 | 1.5 |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이혼) 자료 재구성. <http://kosis.nso.go.kr>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국제결혼 추세를 살펴보면, 2000년에 12,319건이던 국제결혼 건수는 2005년 43,121건으로 급증하였지만, 지난 2006년부터 국제결혼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2006년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건수는 전년보다 3.1%, 2007년에는 전년보다 3.5% 줄어들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급증하던 국제결혼건수가 최근 들어 감소현상을 보이는 것은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 혼인 규제강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

|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총 혼인건수 | 334,030 | 320,063 | 306,573 | 304,932 | 310,944 | 316,375 | 332,752 | 345,592 |
| 외국인과의 혼인 | 12,319 | 15,234 | 15,913 | 25,658 | 35,447 | 43,121 | 39,690 | 38,491 |
| 총혼인건수대비 구 성 비 | 3.7 | 4.8 | 5.2 | 8.4 | 11.4 | 13.6 | 11.9 | 11.1 |
| 증 감 | 1,749 | 2,915 | 679 | 9,745 | 9,789 | 7,674 | -3,431 | -1,199 |
| 증 감 륜 | 16.5 | 23.7 | 4.5 | 61.2 | 38.2 | 21.6 | -8.0 | -3.0 |
| ■ 한국남자+외국여자 | 7,304 | 10,006 | 11,017 | 19,214 | 25,594 | 31,180 | 30,208 | 29,140 |
| 증 감 륜 | 26.5 | 37.0 | 10.1 | 74.4 | 33.2 | 21.8 | -3.1 | -3.5 |
| ■ 한국여자+외국남자 | 5,015 | 5,228 | 4,896 | 6,444 | 9,853 | 11,941 | 9,482 | 9,351 |
| 증 감 륜 | 4.6 | 4.2 | -6.4 | 31.6 | 52.9 | 21.2 | -20.6 | -1.4 |

출처: 통계청, 『2007 혼인통계결과』, 2008.

2007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에서 외국 여성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이 거의 과반수(49.8%)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22.7%), 캄보디아(6.2%), 일본(5.7%), 필리핀(5.3%), 몽골(2.6%), 태국(1.8%), 미국(1.3%) 순이다.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 상대는 동남아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별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과의 결혼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 남성과 중국 여성의 국제결혼은 2000년 3,586건에서 2005년 20,635건으로 급증하였다가 2007년에는 14,52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2000년 95건에서 2006년 10,131건으로 급증하였다가 2007년 6,611건으로 급감하였다. 한국 남성과 캄보디아 여성과의 결혼은 2003년 19건이었다가 2007년 1,804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7년 한국남성과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건수는 전년대비 34.7% 감소한 반면, 캄보디아 여성과의 결혼은 전년대비 357.9%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감소하는 대신에 캄보디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²⁰⁾

<표 3>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

|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구성비 | 전년대비 증감률 |
|---------------|-------|--------|--------|--------|--------|--------|--------|--------|-------|-------------|
| 한국남자+ 외국여자 | 7,304 | 10,006 | 11,017 | 19,214 | 25,594 | 31,180 | 30,208 | 29,140 | 100.0 | -3.5 |
| 총 국 | 3,586 | 7,001 | 7,041 | 13,373 | 18,527 | 20,635 | 14,608 | 14,526 | 49.8 | -0.6 |
| 베 트 남 | 95 | 134 | 476 | 1,403 | 2,462 | 5,822 | 10,131 | 6,611 | 22.7 | -34.7 |
| 캄보디아 | * | * | * | 19 | 72 | 157 | 394 | 1,804 | 6.2 | 357.9 |
| 일 본 | 1,131 | 976 | 959 | 1,242 | 1,224 | 1,255 | 1,484 | 1,665 | 5.7 | 12.2 |
| 필 리 핀 | 1,358 | 510 | 850 | 944 | 964 | 997 | 1,157 | 1,531 | 5.3 | 32.3 |
| 몽 골 | 77 | 118 | 195 | 318 | 504 | 561 | 594 | 745 | 2.6 | 25.4 |
| 태 국 | 270 | 185 | 330 | 346 | 326 | 270 | 273 | 531 | 1.8 | 94.5 |
| 미 국 | 235 | 265 | 267 | 323 | 344 | 285 | 334 | 377 | 1.3 | 12.9 |
| 기 타 | 552 | 817 | 899 | 1,246 | 1,171 | 1,198 | 1,233 | 1,350 | 4.6 | 9.5 |

<출처>: 통계청, 「2007년 혼인통계결과」, 2008.

* 기타에 포함

2007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은 지역적으로 볼 때,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비중이 높다. 지역적으로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전체 결혼 중 13.9%가 외국 여자와의 결혼이며, 이 중 33.9%는 한국 남자의 직업이 농림어업종사자이다.²¹⁾ 한편,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20)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감소하게 된 것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의 가정폭력 사망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베트남 정부가 2007년 국제결혼을 강력히 단속하는 등 규제정책을 시행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중개업자들의 활동이 위축되었으며 결혼성사건수의 감소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자들은 베트남에서의 활동이 위축되자 주변국인 캄보디아로 옮겨 활동하면서 2007년 캄보디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건수가 급증하게 된다.

21) 통계청, 「2007년 혼인통계결과」, 2008, 16쪽.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순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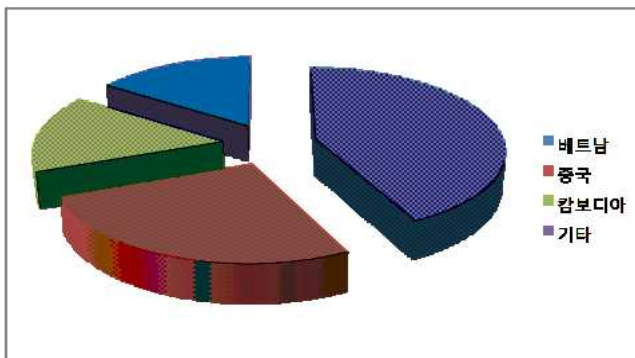
<표 4>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수

| 국적 | 2006 | | | | | 2007 | | | | |
|----|-------|-------|-----|-----|-----|-------|-------|-----|------|-----|
| | 계 | 베트남 | 중국 | 필리핀 | 기타 | 계 | 베트남 | 중국 | 캄보디아 | 기타 |
| 건수 | 3,525 | 2,394 | 718 | 170 | 243 | 3,172 | 1,353 | 842 | 484 | 493 |

출처: 통계청, 『2007 혼인통계결과』, 2008.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결혼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 7,930명 중 40.0%인 3,172명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였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순이다. 지난 2006년과 비교하여 볼 때,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서 베트남 여성이 여전히 수위를 차지하면서도 그 규모가 크게 줄어든 반면, 캄보디아 출신 여성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그림 1> 2007년 농림어업 종사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최근 급증하는 한편,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율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7년 결혼이주여성의 이혼건수는 5,794건으로 2006년에 비해 44.5% 증가했다. 이는 국내 총 이혼건수의 7.1%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렇게 이혼율이 급증하는 이유는 위장결혼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최근 다문화가족의 결혼행태에서 나타나는 매매혼적 성격과 가족내부의 갈등이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절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조사주체별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실태 조사

가. 2002년 광주여성발전센터 실태조사

지난 2002년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는 기독교 방송 광주방송국과 함께 광주·전남지역의 결혼이주여성 100명을 방문하여 상담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조사 대상자 100명 중에서 30명이 한국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했다.²²⁾ 이 조사 결과는 지역적으로 광주지역에 한정된 결과라는 한계가 있지만, 조사연구자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조사대

22) 이 조사 대상자들은 60% 이상이 종교단체의 ‘농촌총각 짝짓기’ 캠페인을 통해 결혼했으며, 출신국가별로는 필리핀(41%), 일본(32%), 조선족(24%) 순이었다.

상자들이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은 개인적으로 수치스러운 개인사라는 점에서 심층면접 조사과정을 통해서 더욱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들이 당하는 가정폭력의 형태를 조사한 결과, 신체적 폭행이 57%, 언어적 폭력이 18%,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 폭력이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빈도별로는 한 달에 한 번인 경우가 33%, 한 달에 두 번인 경우가 42%, 한 달에 세 번인 경우가 13%, 한 달에 네 번 이상 폭행하는 경우가 12%로 조사되었다.

나. 2004년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실태조사

2004년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한 광주·전남 지역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140명의 결혼이주여성 중 36.4%가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폭언이나 욕설 등 언어폭력이 가장 일반적이었고(58.8%), 뺨을 때리는 등의 신체적 폭력의 경우(17.6%)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다. 2006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2006년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실태조사는 한국사회학회를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이뤄졌는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걸쳐 결혼이민자의 성별·출신국별·거주지별 분포를 고려하여 추출한 1,177가족을 표본으로 한 조사이다. 이 조사결과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표본을 추출하여 이뤄진 조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지만, 가정폭력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이 조사는 법무부의 ‘국민의 배우자’와

‘귀화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있는바, 이렇게 추출된 표본에는 이미 가족해체를 경험한 다문화가족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이 조사에서의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 실태는 실제보다 더욱 축소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조사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 폭언과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우가 6.1%, 생활비와 용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5.3%, 송금을 못하게 하는 것을 경험한 경우가 2.5%,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2.1%, 의처증을 경험한 경우가 2.0%, 기타가 3.8%로서, 조사대상자의 16.9%가 이리저리한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83.1%는 전혀 가정폭력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는 다른 조사기관에서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가정폭력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실제 혼인관계에 있는 가정을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표본을 추출한 것으로서, 이미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이혼하였거나 해체된 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은 표본에 포함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이민자’ (18.6%)들이 다른 집단보다 배우자의 폭력적 행동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별로 살펴볼 때, 필리핀 출신 여성이민자(23.3%)가 배우자의 폭력적 행동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²³⁾

라. 2007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

2007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전국가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 조사는 국내 일반가정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이뤄진 것으로서, 다문화가족에 관한 조사 내

23)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년.

용은 그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부부폭력 발생실태를 포함하고 있는데, 최근 1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다문화가족의 부부는 47.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동 기관에서 조사한 한국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 40.3%에 비해서 7.4% 높은 것이다. 이 조사는 동일한 조사문항을 적용하여 국내 일반가족과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을 비교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다문화가족의 부부폭력발생률은 한국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난 1년 동안에 거의 50%에 가까운 다문화가족 부부가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 이 수치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성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의 한국 남성이 외국인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발생한 가정폭력 발생률은 38.8%, 외국인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발생률은 17.8%, 상호폭력은 8.9%로 나타났다.²⁴⁾

이 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 이내 다문화 가정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가한 남편의 폭력행위는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가 3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행위’ 17.6%,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15.5%,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14.5%,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12.2%,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14.4%, 그리고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14.4% 등이 비교적 많았다. 이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폭력행위가 아내에게 가해지고 있었는데, 특히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폭력행위인 ‘혁명, 몽둥이, 칼 등으로 때리는 행위’와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등도 각각 5.3%로 조사되었다.²⁵⁾ 이렇듯 다문화가족 안에서 생명의 위협을 주고 심각한 상해를 입

24) 여성가족부,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2008, 684-686쪽.

25) 여성가족부, 위의 책, 686쪽.

힐 수 있는 폭력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

<표 5> 조사주체별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발생률 조사결과 비교

| 조사주체 | 조사년도 | 조사대상 | 가정폭력발생률 |
|----------|-------|------------|----------|
| 광주여성발전센터 | 2002년 | 광주 100명 | 30% |
| 광주여성의전화 | 2004년 | 광주·전남 140명 | 36.4% |
| 여성가족부* | 2006년 | 전국 1,177가구 | 16.9% |
| 여성가족부** | 2007년 | 전국 38가구 | 38.8%*** |

* 연구수행기관은 한국사회학회임.

** 연구수행기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임.

*** 가정폭력발생율은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 발생율에 한정된 것임. 부부폭력발생율은 47.7%로 조사됨.

마. 이한동의 조사

위 실태조사 결과들이 여성정책 및 인권 관련 기관에서 이뤄진 것인 한편, 학위논문에서 이뤄진 조사결과도 있다. 이한동의 조사가 그것인데, 이 조사는 인천광역시 여성문화회관과 인천광역시 복지관 내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²⁶⁾ 이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규모가 100명 정도이고 지역적으로 인천지역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가정폭력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CTS(Conflict Tactics Scale)에 기초해서 가정폭력 정도를 측정한 연구이다. CTS 척도는 이미 김재엽 등에²⁷⁾

26) 이한동, 앞의 논문, 34쪽.

27) 김재엽·최선희 외, 『한국가정폭력실태와 행위자교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사회복지연

의해서 한국의 가정폭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다양한 가정폭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한동의 연구는 CTS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폭력, 경미한 신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성폭력 등의 항목 외에 경제적 폭력과 사회적 고립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이한동의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가정폭력 경험 유무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6> 가정폭력 경험 유무 조사(이한동 조사)

| | 있음(%) | 없음(%) |
|----------|-------|-------|
| 전체폭력 | 55.8 | 44.2 |
| 언어(정서)폭력 | 32.0 | 68.0 |
| 신체폭력 | 34.7 | 65.3 |
| 경미한 신체폭력 | 33.3 | 66.7 |
| 심각한 신체폭력 | 14.6 | 85.4 |
| 경제적 폭력 | 28.1 | 71.9 |
| 사회적 고립 | 16.0 | 81.0 |
| 성폭력 | 3.1 | 96.9 |

출처: 이한동, 2008, 60쪽.

이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가운데 언어(정서)폭력, 신체폭력, 경제적 폭력, 사회적 고립, 성폭력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5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CTS 척도를 사용한 김재엽의 1997년 조사에서 한국인의 가정폭력 경험률이 31.4%, 1999년 조사에서 한국인의 가정폭력 경험률이 34.1%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김재엽의 조사와 비교할 때, 이한동의 조사에서는 경제적 폭력, 사회적 고립 등과 같은 항목을 가정폭력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신체폭력을 경험한 경우만 해도 34.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볼

구소, 1999.

때,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경험율이 한국인의 가정폭력 경험율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조사에서는 경제적 폭력과 사회적 고립 항목을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경제적 폭력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28.1%가 경제적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경제적 폭력이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집안의 경제 사정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로서 심리적 상해를 입히는 폭력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고립이란 결혼이주여성이 친정에 전화하는 것을 방해받거나 사고모임에 나가는 것을 저지당하는 폭력 경험으로서, 이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16.0%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²⁸⁾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식 조사 결과

가. 2002년 광주여성발전센터 조사

2002년 광주여성발전센터 조사에서는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 피해여성의 64%가 ‘그냥 참는다’고 응답하고 있었고, 26%가 ‘가출한다’고 응답했다. 여성단체 등에 도움을 청한 경우는 9%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그냥 참거나 개인적으로 가출함으로써 폭력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10%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조사에 피해 여성들이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를

28) 이 조사에서는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가정폭력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신체폭력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을 경험한 경우가 21%, 자신을 세계 밀치는 것을 경험한 경우가 22.9%, 손바닥으로 뺨을 치는 것을 경험한 경우가 9.3%,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경험한 경우가 9.3%, 물건(현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맞은 경우가 4.1%,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것을 경험한 경우가 7.2%, 칼(가위)이나 총기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을 경험한 경우가 4.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은 결과,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서’ 라는 응답이 43%,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 같지 않아서’ 라는 응답이 38%를 차지했다.

나. 2004년 광주여성의전화 조사

2004년 광주여성의전화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이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조건 빈다’ (31.4%), ‘항의한다’ (17.6%), ‘그냥 참는다’ (15.7%), ‘상담기관 및 경찰에 신고한다’ (5.9%)로 나타났다.²⁹⁾ 이 조사 결과도 2002년 광주여성발전센터 조사결과와 유사한데, 상담기관이나 경찰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욱 낮게 조사되었다.

다. 2006년 여성가족부 조사

여성가족부 2006년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이 가정폭력에 대처한 방식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 922명 중에서 84명이 가정폭력 경험을 밝혔는데,³⁰⁾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는 84명 중에서 63명(75%)은 가정폭력을 당했지만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21명(25%)은

29) 이 조사에서 가정 폭력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 이하’ 가 58.8%, ‘한 달에 한 번’ 이 17.6%, ‘한 달에 네 번 이상’ 이 7.8%로 조사되었다. 결혼이주여성 본인이 생각하는 가정폭력의 이유는 ‘이해부족’ 이 33.3%, ‘경제적인 문제’ 가 25.5%, ‘술을 마시고’ 라는 응답이 15.7%, ‘모르겠다’ 는 응답이 5.9%를 차지했다.

30) 2006년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조사항목에 따라 자신들의 가정폭력 경험을 다르게 나타낸다. 다른 조사항목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가정폭력 경험이 16.9%로 나타났지만, 이 항목(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신고 경험)에서는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차이는 응답자가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 <표 3-21>의 결과만 놓고 보면 가정폭력을 당했으나 신고한 적이 없는 여성은 63명인 셈인데, 그 아래 항목인 <표3-22>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44명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머지 19명은 <표 3-22>의 항목에서 아예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2006년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가정폭력 경험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³¹⁾

<표 7> 조사주체별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 후 외부기관 신고를
조사 비교

| 조사주체 | 조사년도 | 조사대상 | 외부기관에 신고율 |
|----------|-------|------------|--------------|
| 광주여성발전센터 | 2002년 | 광주 100명 | 9% |
| 광주여성의전화 | 2004년 | 광주·전남 140명 | 6% |
| 여성가족부* | 2006년 | 전국 1,177가구 | 25% |

3. 경찰·상담소 신고 후 만족도 조사

2006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는 가정폭력 해결방법의 도움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17.2%였는데, 경찰에 신고한 결혼이주여성들 가운데 50%는 경찰신고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50%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가정폭력을 당한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결혼이민자 상담소 상담 방문을 한 경우는 14.9%였는데, 결혼이민자 상담소를 방문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자보다 4.5배가량 많았다. 상담전화를 이용한 경우는 10.8%에 불과했는데, 이용자 가운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자보다 1.6배가량 많았다. 가정폭력을 당한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을 해

31) 이 수치는 2006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 <표 3-21> “가족폭력에 대한 경찰신고경험” 조사 자료를 재구성해서 산출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가정폭력을 당하고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신고방법을 몰라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2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는 것이 좋다’ 는 응답이 17.4%, ‘자녀에게 경찰 신고하는 것을 보이기 싫어서’ 라는 응답이 15.2%, ‘신고를 빌미로 폭력이 더욱 심해질까봐’ 라는 응답이 10.9%, ‘신고해도 경찰관이 해결해주지 못할까봐’ 라는 응답이 6.5%, 기타 응답이 26.1%를 차지했다.

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담전화나 결혼이민자 상담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비중이 좀 더 높지만, 그 만족도는 결혼이민자 상담소, 상담전화, 경찰신고 순으로 조사되었다.³²⁾ 가정폭력을 당한 결혼이주여성이 경찰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은 데 대한 만족도가 50%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4. 다문화가족 부부의 이혼 실태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은 결국에는 부부의 이혼으로 이어진다. 아래 <표 8>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다문화가족의 이혼건수를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로 조사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이혼건수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다문화가족의 이혼건수는 매해 2배 정도 늘어나다가 지난 2007년에는 조금 증가세가 누그러졌지만 그래도 2007년 다문화가족 이혼건수 증가율은 44.5%에 이른다. 2007년을 놓고 볼 때, 가장 이혼건수가 많은 결혼이주여성 국적은 중국이고 그 다음은 베트남, 필리핀 순이다.

32) 여성가족부, 앞의 책, 2006, 110쪽.

<표 8> 최근 5년간 다문화가족의 이혼 현황

| | 2003 | 2004 | 2005 | 구성비 | 2006 | 구성비 | 2007 | 구성비 | 증감률 |
|----------------|-------|-------|-------|-------|-------|-------|-------|-------|-------|
| 한국남자+ 외국여자 | 583 | 1,611 | 2,444 | 100.0 | 4,010 | 100.0 | 5,794 | 100.0 | 44.5 |
| 중 국 | 275 | 841 | 1,431 | 58.6 | 2,551 | 63.6 | 3,665 | 63.3 | 43.7 |
| 베 트 남 | 28 | 147 | 289 | 11.8 | 610 | 15.2 | 895 | 15.4 | 46.7 |
| 필 리 핀 | 44 | 112 | 142 | 5.8 | 171 | 4.3 | 220 | 3.8 | 28.7 |
| 일 본 | 121 | 145 | 168 | 6.9 | 202 | 5.0 | 219 | 3.8 | 8.4 |
| 몽 골 | 6 | 83 | 116 | 4.7 | 132 | 3.3 | 173 | 3.0 | 31.1 |
| 우 즈 베 키 스 탄 | 16 | 67 | 75 | 3.1 | 105 | 2.6 | 112 | 1.9 | 6.7 |
| 캄 보 디 아 | * | 4 | 6 | 0.2 | 19 | 0.5 | 99 | 1.7 | 421.1 |
| 기 타 | 93 | 212 | 217 | 8.9 | 220 | 5.5 | 411 | 7.1 | 86.8 |
| 한국여자+ 외국남자 | 1,581 | 1,789 | 1,834 | 100.0 | 2,270 | 100.0 | 3,034 | 100.0 | 33.7 |

출처: 통계청

다문화가족 부부의 이혼이 모두 가정폭력에 기인한 것은 아니겠지만, 안현주(2006)의 연구에 의하면, 심층면접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14명은 모두가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는데, 그 가운데 7명이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을 위해서 별거상태에 있었으며, 나머지 7명은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모두가 결혼생활에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그 정도가 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 사실 결혼이주여성이 이혼을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정이다. 특히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더 힘든 결정이

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이혼은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는 것이거나 타국에서 의지할 곳 없는 외톨이 신세가 되는 것이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정하는 다문화가족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전남편이랑 2년 반 정도 살았어...국적나올 때까지 산거지...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참았나 싶어...꼭 꿈을 꾸거 같아...하루에도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고, 이혼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대로 집을 나가면 나는 불법체류자다, 2년만 꼭 참고 살자(울음)...마음먹고, 2003년 6월 달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바로 이혼해 버렸어.”³³⁾

제3절 다문화가족의 부부갈등 요인

1. 다문화가족 내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영향으로 아시아에서 “이주의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아시아의 여성들이 노동자로, 성산업 서비스 종사자로, 때로는 국제결혼 당사자로서 이주를 한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여성들의 이주현상은 경제적인 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려는 동기보다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이주가 더

33)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33세)과의 심층면접 조사 내용(안현주, 2006, 60쪽). 2004년 4월 1일부터 국적법 개정으로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국적을 얻기 전에 남편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강제 퇴거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결혼이주여성도 귀화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6년 4월 발표된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지원정책」에서는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이혼 이후 간이귀화 신청시 입증요건을 완화하는 시책을 펴고 있다.

욱 큰 동기가 되고 있다. 보다 나은 삶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한국행을 희망하는 아시아 여성들이 공급자의 위치에 서 있는 한편에는 아시아 여성들을 요구하는 국내 한국남성들의 수요가 있다. 국내에서의 성비의 불균형과 고학력여성들의 결혼 기피현상 등으로 국내 결혼시장에서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한 남성들이 그 수요자들이다.

여기에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개입하여 결혼을 성사시키면서 한국남성으로부터는 결혼을 성사시키는 데 필요한 돈을 받고, 대개의 경우 외국인 여성의 본국 가족에게는 다달이 일정액을 송금하겠다고거나 일시불의 댓가를 지불하고서 결혼을 성사시키는 거래가 이뤄진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국제결혼은 다분히 매매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거래로서의 결혼’은 돈을 지불하는 한국 남성과 경제적 지원을 받는 외국인 여성간의 경제적 불평등 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필연적으로 당사자들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가져온다. 더구나 남성이 가족의 부양자이며 보호자로 간주되는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결혼 이주여성은 남성의 ‘사적인 자원’으로서 인식되고, 남편과의 사적 관계를 통해서만 안정적인 사회적 신분을 보장받는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된다. 다른 한편에서 다문화가족 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결혼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한국남성이 신원보증인 자격을 갖고 있는 데서 더욱 강화된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결혼생활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증하는 사람은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인 한국남성이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국내 체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즉 신원보증인 자격이 남편에게 주어져 있는 현 제도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배우자의 종속적 위치에 처하게 한다. 오늘날 다문화가족 안에서의 이러한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결혼이주여성을 성차별과 인권침해, 가정폭력으로 내몰리게 하는 구조적인 요인이다.

2. 여성의 상품화

최근에는 정부의 단속으로 많이 사라졌지만, 광고 현수막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서 국제결혼을 홍보하는 광고 내용 중에는 “초·재혼 상관없음/나이 상관없음/후불제/염가제공/도망가면 책임짐/도망가면 다시 책임지고 주선함/베트남 스티처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흔했다. 이러한 광고 내용은 결혼이주여성을 성적으로 상품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결혼이주여성을 성적으로 상품화하는 이러한 시각은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안현주(2006)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경험한 심층면접 대상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이 한국 남편들로부터 상품처럼 취급당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을 돈을 들여 사왔다는 의식이 다문화가족에서 가정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고 죄의식을 갖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언어문제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6년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와 대화할 때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고 있다.³⁴⁾ 그런데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의 1.3%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거

34) 설동훈 외, 2006, 91쪽.

의 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별히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6%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를 사용할 때 불편한 정도를 조사했는데,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의 65.5%는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14.2%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 사용에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것은 중국 조선족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수에 이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실은 출신국가별로 한국어 사용의 불편정도를 조사한 데에서 나타나는데, 조선족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2.3%만이 한국어 사용에서 불편하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30.4%,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 여성은 41.3%가 한국어 사용이 불편하다고 응답하고 있다.³⁵⁾

“국제결혼을 해서 안 좋은 점은 한국말을 못해서 처음 1년 동안 남편과 많이 싸웠어요. 말이 안 통해서 좀 힘들었어요. 남편이 여자랑 통화하면 누군지 몰라서 여자친구인가 생각해서 싸웠고, 남편고모, 이모가 전화해도 여자친구인 줄 알고 의심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영, 영한사전 사주면서 1년 동안 한국말 많이 가르쳐줬어요.”³⁶⁾

4. 가족들과의 관계

부부관계의 갈등요인으로서 부부 당사자들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의 관계이다. 2006년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은 일반 한국가정에 비해 배우자의 가족, 특히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과 동거하는 비율이 다소 높다.³⁷⁾ 이 조사

35) 설동훈 외, 2006, 93쪽.

36) 필리핀 결혼이주여성(23세) 심층면접 사례(설동훈 외, 2006, 90-91쪽).

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가장 힘든 가족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결혼이주여성의 72%가 가족 중 힘든 관계는 없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 조사에서 ‘이혼이나 별거 등의 사유로 가족해체를 경험한 이민자가족’이 표본에 거의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³⁸⁾ 가족 중에서 힘든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가장 힘든 관계로 지목한 대상은 역시 배우자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였고(9.1%), 배우자(4.0%), 배우자의 형제자매(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 특별히 필리핀 출신(21.0%)과 중국 한족출신(12.7%)의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의 어머니와의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기간 동안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통계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남편이 81.8%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시어머니(11.2%), 시누이/남동생 등 형제(3.1%), 기타 가족(2%) 등도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2006년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외국인 여성이 “순종적이고 내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서” (37~40%)인데,³⁹⁾ 농촌지역 한국 남성에게서 더욱 중요하게 나타나는 동기이다. 즉, 한국 남성, 특별히 농촌지역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로서 가장 큰 동기는 “순종적이고 내 부모에게 잘 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인데, 결혼이주여성이 가족관계에서 가장 큰 어려

37) 이 조사에 의하면, 부부만이 사는 가구가 88.2%,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구는 56.4%이며,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확대가족은 22.3%이다. 농촌 거주 여성의 37.3%, 특히 베트남 여성의 40.2%가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다(설동훈 외, 2006, 154쪽).

38)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 쉼터’나 ‘이주여성상담소’ 등을 통해서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 결혼이민자”를 별도로 표집하여 모집단과 분포가 유사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2006년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 만족도가 더욱 낮게 나타난다.

39) 설동훈 외, 2006, 76쪽.

움을 겪는 부분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불일치가 다문화가족에서의 부부 불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가정폭력 경험 이주여성들에 대한 상담과정에서 나타난 가정폭력상의 특징은 첫째,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여 상호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으며, 둘째 한국 남성들이 배우자인 이주여성을 상당한 비용을 들여 구매한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셋째 남편의 아내구타와 함께 가족구성원들의 학대가 동반되고 있으며, 넷째 가해 남편들은 알콜 중독이거나 중독에 가까운 정도의 음주습관이 있거나, 일자리가 불안정하거나 무직이며, 사회적으로 관계맺기와 대화를 하는데 미숙함이 있거나, 가부장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⁴⁰⁾

제4절 다문화가족에서의 가정폭력의 형태

1. 신체적 폭력

가정폭력은 남편이 부인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그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¹⁾ 폭력지향적인 남성들의 경우, 자신의 육체적인 힘을 하나의 자원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나 지식 등과 같은 사회적 자원이 결핍되어 있을 때, 이를 보장받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족의 많은 경우에 한국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

40) 이금연, “한국이주여성의 지원체계와 문제점”, 『2004 이주여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자료집』, 2004.

41) 공미혜, 『한국의 가부장적 테러리즘: 아내구타자 교육프로그램』, 하우, 1999.

로 데려오기 위해서 대개 국제결혼중매업체를 이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은 배우자를 돈을 주고 산 사적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문화가족의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불평한 권력관계는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안현주(2006)의 심층면접조사에 의하면, 한국 남성들은 자신들이 돈을 지불하고 외국인 여성을 데려왔기 때문에 외국인 아내가 자신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자신의 폭력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남편은 항상 나랑 결혼한다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돈이 없다고 화를 냈어요...그래서 좋은 소리도 한번 두 번이지 ‘그럼 왜 결혼을 했냐고’ 따지니까... 어디 말대꾸냐면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다음날 깨어보니까 온 몸이고 바닥이고 피투성이더라구요...그때가 결혼 한달만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을 제대로 못하고 살았어요” 42)

“남편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그리고 여자는 딱 예 아니오 두 마디만 하라고 하는데...처음에 6개월 동안 그랬어요...그랬더니 바보라고 해서...말대꾸했더니 성질이 더럽다고 했어요...그리고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500만원을 주었다고, 결혼하면서 1000만원을 썼다고 다 내놓고 가라고...그때부터 말대꾸하면 때리기 시작했어요. 늘 때리면서 남편은 한국여자들처럼 고분고분하지 않고 말대꾸한다고 때렸어요. 하루는 16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린다고 남편이 날 밀기도 했어요” 43)

“남편이 (.....)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급하니까 폭력이 좀 있어요. 가끔 쌍욕을 하고, 말보다 손이 먼저 나와요. 손찌검을 해요. 한

42)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46세)과의 심층면접 내용(안현주, 앞의 논문, 28쪽).

43)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43세)과의 심층면접 내용(안현주, 앞의 논문, 29쪽).

국 남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싸울 때가 많죠. 하늘같은 남편에게 어떻게 그러냐고, 같은 일을 해도, 가사 일은 여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힘들고 그런 거 따질 이유 없이 당연한 거다.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명절 때도 남자는 일 안하고, 나도 애기업고 일했어요. 중국 있을 때 한국은 그렇다고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지내요. 주위 아줌마들하고 이야기 할 때 그건 뭐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고.44)

2. 사회적 고립을 통한 폭력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에게 주어지는 폭력의 형태 가운데 하나는 결혼이주여성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가하는 폭력이다. 다문화가족에서 사회적 고립을 통한 폭력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정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외출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등의 행태이다. 사회적 고립을 통한 가정폭력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에 기인한다. 그것은 결혼이주여성이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일 뿐으로 쉽게 도망갈 사람들이라거나, 위장 결혼한 것일 수 있다는 편견이다. 특히 결혼한 이주여성은 2년이 지나면 국적취득이 가능해지는데, 결혼이주여성은 국적취득을 방해받기도 한다는 면접조사 결과가 있다.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도망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편견이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폭력으로 작용한다.

“결혼하고 원래 서울에 사는 이모랑 사촌동생을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남편도 그러라고 했거든요...결혼하고 1주일쯤 되었는데...남

44) 중국 조선족 출신 결혼이주여성 순이씨와의 심층면접 내용(설동훈 외, 2006, 106쪽).

편이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그리고는 새벽에 술이 취해서 와서는 서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너무 화가 나서 가겠다고 했더니...도망가려고 한다고 막 화를 내면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온 몸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45)

사회적 고립에 의한 폭력과 유사한 형태는 유기 혹은 방임하는 경우이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상담자료에 의하면, 46) 결혼이주여성 아내가 싫어졌다고 쫓아내거나 한국남성 자신이 가출해버림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을 방임하는 경우, 결혼이주여성이 자주 아프다고 쫓아내는 경우, 결혼이주여성과의 사이에 아기를 얻은 후 아기만 남겨두고 쫓아내는 경우, 결혼이주여성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식을 한국남성이 이미 이혼한 전부인에게 보내고 전부인과 다시 가정을 합치려는 경우 등 다양한 유기 및 방임 형태의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 성적 폭력

다문화가족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가해지는 남편의 성적 학대는 일반 한국가정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성을 띤다. 국제결혼중매센터를 통해서 국제결혼에 이른 한국 남성들 중에는 자신이 결혼이주여성을 돈을 주고 샀다는 인식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여성의 몸도 돈을 주고 샀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한국의 성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의 변태적 성적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없다. 성적 폭력은 때때로 아내 강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안현주의 연구에서 나타난 심층 면접조사 결과는 다문화가족에서 한국 남성들이 결혼이주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45)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29세)과의 심층면접 내용(안현주, 앞의 논문, 46쪽).

46) 강성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실과 지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3쪽.

있는 듯이 행동하며, 여성의 몸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순하고...그런데 술만 먹고 뭐가 화가 나면 때려요...그리곤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해요...하루는 남편이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왔는데...갑자기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그래서 왜 그리냐고 했더니...계속 때리고 코피도 나고 유리창도 깨져서 집도 엉망인데...갑자기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억지로...싫다고 해도...내 말은 들리지도 않나 봐요...무시하는 건지...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47)

“남편은 이상한 비디오를 보여주고 계속 ‘따라해 봐’ 라고 해요... ‘하기 싫어’ 하면 ‘한국여자들은 다 저렇게 한다’ 고 했어요...빨리 한국여자 되어야 하나까...그렇게 했지” 48)

“제일 기분 나쁜 말은...관계할 때마다 ‘사창가에 가서 할려면 5만원이 드는데, 너를 500만원 주고 사왔으니 100번은 해야 본전이다’ 라고 했어...그 말이 제일 기분 나빠...비참하고...내가 그런 여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할 수도 있어...그런 여자들은 돈이라도 받고...맞지는 않겠지...” 49)

4. 정서적 폭력

다문화가족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남성들로부터 자존심의 상처를 입거나, 모욕감과 혐오감을 느끼는 등 정서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기도

47)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29세)과의 심층면접조사 내용(안현주, 앞의 논문, 51쪽).

48) 베트남출신 결혼이주여성(43세)과의 심층면접조사 내용(안현주, 앞의 논문, 52쪽).

49)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33세)과의 심층면접조사 내용(안현주, 앞의 논문, 53쪽).

하다. 결혼이주여성을 향하여 욕설을 퍼붓거나, 여성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을 짓밟고 스스로 가치없는 존재로 느끼게 한다. 이러한 정서적 폭력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폭력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성에게 주어지는 폭력으로서 한층 강화된 형태로 주어진다.

“나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어요...아니 거실에서 슬리퍼를 신는다고 기본이 안되어 있고 무식하다며 욕을 했어요...아니 실내에서 슬리퍼 신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오히려 맨발로 다니는 남편이 더 야만인 같은데...그리고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우즈베키스탄 집에서 양념을 조금 보내줬는데, 남편은 그 냄새가 싫다면서 당장 다 버리라며 소리를 질러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가져다 왔어요.”⁵⁰⁾

5. 경제적 폭력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자료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는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친정으로 돈을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게 하고 그 돈을 빼앗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⁵¹⁾

50) 우즈베키스탄 출신 결혼이주여성(39세)과의 심층면접조사 내용(안현주, 앞의 논문, 56쪽).

51) 강성혜, 앞의 논문, 13쪽.

제4장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현황

제1절 정부의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정책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결혼이주여성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가 결혼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언어소통의 곤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인식하고 2004년부터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하였다.

정부의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대책은 세 단계에 걸쳐 마련되었다. 2005년 8월 정부는 제1차로 결혼이민자의 체류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한다. 안정적 체류지원, 생활정보제공, 한국어·한국문화 이해 교육, 가족관계 증진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그해 9월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차 대책으로서, 2005년 11월에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체계 구축, 자녀양육 지원 등 생활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제3차 대책으로서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2006년 4월 26일,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는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74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 사회통합 지원대책에 따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목할 만한 대책으로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결혼이주여성 방문교육사업, 보건소 통역서비스 등이 있다.

<표 9> 현행 결혼이민자 통합 정책: 7개 정책과제와 26개 단위과제

-
1.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 ① 결혼중개업체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
 - ②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한 입법 추진
 - ③ 인신매매 등 중개행위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 ④ 재외공관에 여성·인권담당관 배치 검토
 - ⑤ 결혼사증 발급 서류·절차 표준화 및 사전 사증인터뷰 제도 도입 검토
 - ⑥ 외교채널을 통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 ⑦ 결혼 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제공

 2.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 ①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요건 강화
 - ②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 ③ 이혼 이후 간이귀화 신청시 입증요건 완화
 - ④ 사실혼 부모 출생자녀 및 외국인 모에게 국적 또는 영주권 부여
 - ⑥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보호

 3.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 ①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②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 지원

 4.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 ① 다문화교육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결혼이민자 자녀지원 기능 강화, 교사역량 강화, 집단 따돌림 예방
 - ②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5.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 ① 기초생활 보장 및 건강증진 지원
 - ②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③ 직업상담 및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

 6.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 ① 정부정책 안내 및 일반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 ②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 ③ 공무원 교육 실시
 - ④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7. 추진체계 구축
 - ①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 ②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 ③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및 통역, 상담, 교육인력 양성
 - ④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중앙, 지방정부간 정책네트워크 구축

자료: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 58).

1.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대책

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정부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결혼이주여성 가족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전달체계로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2008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총 80개소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교육⁵²⁾, 가족통합교육⁵³⁾, 가족상담⁵⁴⁾, 문화이해교육 등⁵⁵⁾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⁵⁶⁾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문화사회를 구현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결혼이민자 가족통합정책은 각 부처에서 입안한 정책들을 분류하여 체계화한 것으로서, 예산권을 갖고 있는 정부 부처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분류하여 추진한 결과,

52) 한국어교육은 집합교육, 거점교육,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로 이뤄지는데,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한국어 수확능력이 뛰어난 학습자들을 발굴하여 자국민 언어강사로 활용하고 있거나, 언어권별로 통역자원봉사자들을 두어 한층 심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07.12.3).

53) 가족통합교육은 배우자교육, 시부모교육, 자녀교육, 부모교육, 가족교육 등 대상별·주제별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간에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54) 가족상담은 언어·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개별상담과 가족별·국적별 집단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55) 문화이해교육으로서, ‘지역문화탐방’, ‘결혼이주여성 출신국 문화·음식 소개 및 체험’, ‘한국요리교실’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 ‘컴퓨터지원사업’, ‘지역사회 협의체 구축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센터별로 진행되고 있다.

56)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07.12.3).

부처간 정책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나. 결혼이주여성 방문교육사업 추진

(구)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7년부터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도우미(한글교육 및 아동교육도우미)를 양성·파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이민자방문교육(찾아가는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⁵⁷⁾ 이 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이 활동상의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접 결혼이주여성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한글교육서비스’ 및 ‘찾아가는 아동교육지원서비스’가 그것인데, ‘찾아가는 한글교육서비스’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전문 도우미의 사전 상담을 거쳐 결혼이주여성의 한글교육과 가족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 사업은 양육기술이 부족한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에게 출산·육아·양육의 방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⁵⁸⁾ 보건복지가족부는 양질의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경력을 기준으로 도우미를 선발하고 양성교육 내용과 시간을 확대하며, 특히 한글교육 도우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수교육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 보건소 통역서비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2008년 5월 26일부터 한국말이 어려운 결혼이

57) 지난 2007년 결혼이민자방문교육사업 예산은 23억 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182억 원으로 증액되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07.12.3).

58)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는 2007년 복권기금으로 처음 시범 실시한 것으로서, 2007년 9월 현재 수혜 가정수는 2,254가정이다. 자녀학습지도, 부모상담, 생활지도, 아동상담 순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주여성을 위하여 보건소에 통역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건강수준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언어소통의 문제와 경제적 이유에서 제때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전국 10개 지역 보건소에 진료상담시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통역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들인데, 이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 그 동안 언어장벽 때문에 외출이 어려웠던 새내기 결혼이주여성들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통역서비스를 맡고 있는 기정착 결혼이주여성들로부터 자녀양육 문제 등 새내기 결혼이주여성들이 원하는 내용의 상담과 지원을 자국 결혼이주여성들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⁵⁹⁾ 한국사회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을 통역원으로 배치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새로운 사업은 기정착한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내기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진료환경을 제공하며, 한국사회에서의 정착을 먼저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으로부터 현실적인 상담과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 다문화가족 지원대책 개선방안

가.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

2006년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사회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6년 12월 현재 국내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취업률은 34.2%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⁶⁰⁾ 미취업 결혼이주여성의 82.2%

59)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8.5.19.

가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⁶¹⁾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다문화가족의 다수가 우리사회에서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거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국정홍보처의 협조를 받아 월드리서치에 의뢰하여 이뤄진 결혼이주여성 대상 전화면접 조사결과에 의하면,⁶²⁾ 일반국민의 대다수(93.0%)는 결혼이주여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해 볼 때, 다문화가족의 국내 생활안정을 위해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저소득 여성의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결혼이주여성에게도 개방할 필요가 있다.

나. 결혼이주여성 전용 쉼터의 확대

2006년 10월 29일부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2년 범위 내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보호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 법에 의해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전국 2개소(인천, 천안)에 불과했던 결혼이주여성 전용쉼터는 4개로 확대되고 있지만,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국내에 연고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용쉼터의 확대가 요구된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쉼터들이

60)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07.3.21).

61) 이 조사에 의하면, 국내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은 한국 전체 가구소득의 50%, 한국 전체 생산직가구소득의 68% 수준에 불과하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185만 원 정도로서, 경제적 생활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설동훈 외, 2006).

62) 이 조사는 여성가족부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2007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한 것이다.

있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용할 때, 한국여성들에 의한 차별 경험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쉼터는 국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통역시스템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들만을 위한 전용 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

3. 인권교육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사회적으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인 소수자(Minorities)들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동남아의 가난한 지역 출신이라는 점 외에도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소수자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다문화가족 내에서의 한국 남편들에 의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이 차별과 편견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요구되며,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상담소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정부의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체계 현황

1. 여성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정폭력피해자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국가 등의 책무,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근거하여 설치된 여성 긴급전화 1366은 현재 광역자치

단체(시·도)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1998년 시작한 <1366>은 여성부 신설과 함께 담당부처가 바뀌어 여성부의 중요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1366>은 현재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데, 언제든지 통화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긴급전화로서, 그 특성상 긴 상담보다는 필요한 정보나 상담소를 안내받으며, 긴급할 경우 긴급보호를 받는 데 이용된다. <1366> 서비스에는 상담의뢰인이 요구하는 적절한 위기 개입이나 긴급구조를 위해 119, 112 등에 연계 조치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안내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1366은 긴급피난처를 갖추고 있는데, 심야에 불가피하게 피난처를 요구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일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 보호조치를 한 후에는 관련기관(상담소, 행정기관, 수사기관, 병원 등)과 협조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 긴급전화 <1366> 상담실적은 지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1366>을 통한 가정폭력 지원서비스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⁶³⁾

2006년 11월부터는 특별히 가정폭력을 당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해서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1577-1366)가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소통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영어/따갈로그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등 총 8개 국어의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도 위기개입, 면접상담, 법률상담시 전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보호시설 및 상담기관을 연계해 주며, 가족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통역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⁶⁴⁾

63) 박수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연구-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0-11쪽.

2.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거나 상담하는 일, 피해자 등에 대한 임시보호 및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로의 인도, 법률구조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피해자 등의 임시보호,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실시,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지원 등의 일을 하고 있다.⁶⁵⁾ 결혼이주여성들도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언어의 장벽이 있다.⁶⁶⁾

3.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하여 숙식제공, 상담 및 심리치료, 의료기관 인도 및 의료지원,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협조요청, 자립자활교육 실시 및 취업정보 제공, 그밖에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일,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주소지 외의 취학 지원 등을 위한 시설이다. 보호시설은 단기보호시설과 장기보호시설⁶⁷⁾, 외국인 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등으로 나누어진다.⁶⁸⁾ 그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입소할

64) 강성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실과 지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9쪽.

65) 가정폭력피해자법률 제4조의 4, 시행령 제1조의 3.

66) 박수진, 앞의 논문, 11쪽.

67)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들을 6월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며,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가정폭력피해자법률 제7조의 2 제1,2호).

68) 가정폭력피해자법률 제7조의 2.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로서 모자일시보호시설과 모자보호시설 등이 있다.⁶⁹⁾

결혼이주여성들이 주로 피난할 수 있는 곳은 긴급할 경우 <1366> 긴급 보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1366> 협의체 소속의 단기피난처나 중장기 모자 일시보호소를 이용할 수 있다. 모자 일시 보호소는 결혼이주여성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단지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는 법률적인 절차상 복잡성과 까다로움이 있어서 전문 이주여성쉼터로 연계되고 있다.

4. 법률구조기관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률구조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등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무료법률구조는 법률지식의 부족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 대해 법률구조를 실시해 줌으로써 여성의 기본권 인권을 옹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는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다.

5. 의료기관

의료기관은 가정폭력피해자법률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

69) 박수진, 앞의 논문, 12쪽.

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비용을 의료기관에 지불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⁷⁰⁾

6. 수사기관

가정폭력특례법 제5, 7조에 명시된 수사기관은 경찰인데, 경찰청 생활안전국,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찰서 생활안전계·여성청소년계·형사계·조사계와 일선 파출소 및 지구대에서 가정폭력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 내에 ‘가정폭력전담반’을 설치하여 여성폭력 범죄를 처리하게 하고 있다. 그 외에 경찰에서는 112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12는 전화로 접수하여 현장조치가 끝날 때까지 지휘·통제하는 112신고센터(경찰서별로 운영)와 실제로 현장에 출동하는 112 순찰차(일선 지구대 배치)로 구성되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112 순찰차, 형사기동대차 또는 지구대에 우선 신고하여 3-5분 이내에 출동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⁷¹⁾

7. 사법기관

가정폭력특례법 제8,9,21,29,43조에 따라 검찰에서는 가정폭력 전담검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검찰청에는 가정폭력전담검사가 있다. 법원에서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최근 법원의 보호처분

70) 다만, 가정폭력피해자법률 제18조 4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71) 박수진, 앞의 논문, 14-15쪽.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도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제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실제로 한 필리핀 여성이 남편을 당국에 신고하여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 남편이 폭력행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주춤하도록 만든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합법적인 여성들에게 해당되며, 비자가 없는 여성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불법체류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사건처리 절차 도중 공무원 내부 업무협력관계를 근거로 퇴거명령을 내리도록 법무부로 이첩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시킨 사례도 있었다.⁷²⁾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체계는 국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정을 벗어난 결혼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와 쉼터, 보호소 등이 필요하며, 심리적 치료를 위한 지원과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위한 지원, 사회복지적인 지원과 법률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 여성을 위한 지원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쉼터와 상담소,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등에서의 통역지원, 체류권과 관련한 법률지원 등의 측면에서 더욱 세밀한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제3절 가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경찰의 지원체계 현황

경찰은 가정폭력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정폭력전담반 운영, 여성청소년계 설치, ONE-STOP 지원센터 운영, 여성아동청소년 경찰지원센터 운영 등은 그 대표적인 지원시스템들이다.

72) 이금연, 2004, 89쪽.

1. 가정폭력전담반 설치 운영

경찰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전문적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각 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 내에 ‘가정폭력전담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7년 9월 현재 전국 16개 지방청에 43명의 가정폭력전담 경찰관이 활동하고 있다.

<표 10> 가정폭력전담 경찰관 활동 현황

| 지 방 청 | 총 계 | 서 울 | 부 산 | 대 구 | 인 천 | 울 산 | 경 기 | 강 원 | 충 북 | 충 남 | 대 전 | 전 북 | 전 남 | 광 주 | 경 북 | 경 남 | 제 주 |
|-------|-----|-----|-----|-----|-----|-----|-----|-----|-----|-----|-----|-----|-----|-----|-----|-----|-----|
| 인원 | 43 | 2 | 4 | 3 | 4 | 2 | 2 | 2 | 2 | 2 | 2 | 3 | 4 | 3 | 3 | 2 | 3 |

출처: 이금형, 2007, 24쪽.

2. 여성청소년계 설치

경찰은 여성·청소년 범죄예방과 근절을 위해 2001년 1월 경찰청 내에 ‘여성실’을 설치하고, 지방청 및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계를 설치하였다. 2002년 1월 경찰청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2007년 7월 여성청소년계가 설치되지 않은 1급지 24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계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2007년 말 현재 1급지 126개서에서 여성청소년계가 운영 중에 있다. 향후 2·3급지 110개 경찰서에도 여성청소년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국 경찰서에 확대 설치되고 있는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등을 포함하여 가정폭력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1> 여성청소년계 설치 현황

|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울산 | 대전 | 광주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경찰서 | 236 | 31 | 14 | 9 | 8 | 4 | 5 | 5 | 34 | 17 | 11 | 14 | 15 | 21 | 24 | 22 | 2 |
| 설치 | 126 | 31 | 14 | 8 | 7 | 4 | 5 | 5 | 25 | 3 | 2 | 2 | 4 | 3 | 5 | 6 | 2 |
| 미설치 | 110 | 0 | 0 | 1 | 1 | 0 | 0 | 0 | 9 | 14 | 9 | 12 | 11 | 18 | 19 | 16 | 0 |

출처: 이금형, 2007, 24쪽.

3. ONE-STOP 지원센터 운영

ONE-STOP 지원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의료·수사·법률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여성경찰관·상담사·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해 있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NE-STOP 지원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성매매 피해자들이 상담, 진료, 수사, 재판 등을 받기 위해 상담소, 병원, 경찰·검찰, 법원 등의 여러 기관들을 전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중복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곳에서 상담, 진료, 수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06년 말까지 전국 14개 시·도에 ONE-STOP 지원센터 설치가 완료되었고, 2007년에는 경기도 의정부의료원에 경기북부 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여성아동청소년 경찰지원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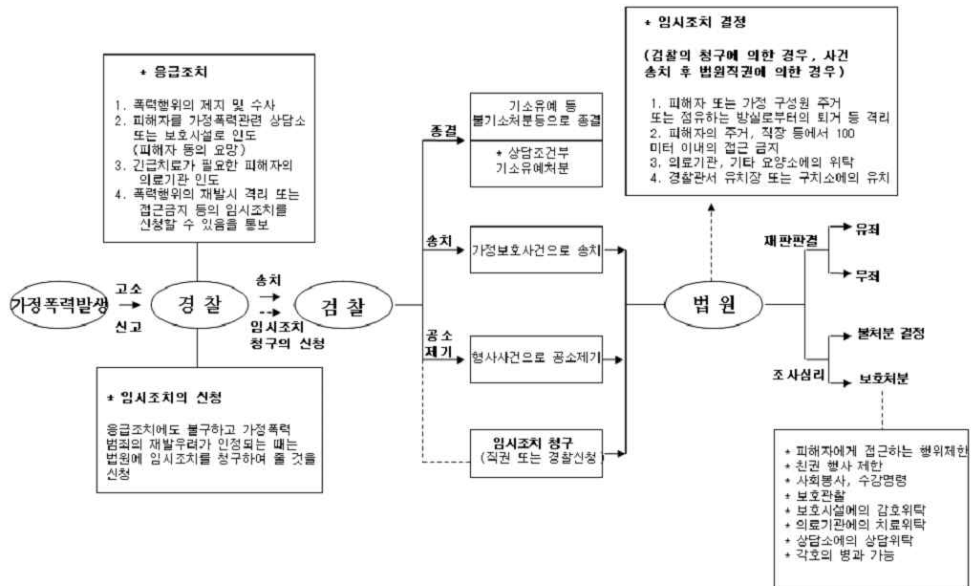
경찰청은 2007년 7월 그동안 분산 운영되고 있던 '117 성매매여성 긴급지원센터', '182실종아동찾기센터', 그리고 'ONE-STOP 지원센터' 중앙지원업무를 통합하여 '여성아동청소년 경찰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피해자 및 실종아동 등을 보호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피해자 쉼터와 NGO 상담실 등을 설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보호하고 있다.

제5장 다문화가족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피해자 보호대책

제1절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경찰의 역할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사건발생 → 경찰신고 → 경찰 현장 출동 → 응급조치 → 수사진행 및 임시조치 신청 → 검찰 송치 →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 법원의 조사·심리 → 보호처분결정 혹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검찰송치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가정폭력 사건 처리절차에서 경찰의 주요 역할은 가정폭력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가정폭력특례법 제5조)를 취하는 데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임시조치(가정폭력특례법 제8조)를 신청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이다(가정폭력특례법 제7조).

<그림 2> 가정보호사건 처리과정



출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예방지침서』, 2003, 34-35쪽.

1. 응급조치

응급조치란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말하는데,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응급조치의 내용은 ①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수사, ②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④ 폭력행위가 재발시 가정폭력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 등이다.⁷³⁾

2. 임시조치 여부 판단

‘임시조치’란 판사가 필요에 따라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이 거주하는 곳에서 나가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이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경찰관서 유치장 등에 가둬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경찰은 해당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시조치의 내용 가운데 경찰이 신청할 수 있는 임시조치는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이며, 나머지 사항은 피해자가 의견을 제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검찰청 송치

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이때 경찰관은 해당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를 요구하는지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사에게 가정보호사건 처리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73) 응급조치를 취한 경찰관은 행위자의 인적사항,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사실의 요지, 가정상황, 피해자, 신고자, 응급조치의 내용을 기재한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한다(이금형,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지원체계와 향후 인권보호를 위한 방향”,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대응과 피해자 안전보호를 위한 열린 포럼 자료집』, 2007, 22쪽).

제2절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조치 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1. 법률·제도적 차원

가. 경찰관의 임시조치 권한의 부재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에서는 경찰이 해당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경찰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임시조치가 신청되어 검사의 청구를 거쳐 판사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에는 1주일 이상이 소요된다. 경찰에 의해서 임시조치가 신청되고 그것이 결정되기까지 소요되는 1주일 동안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의 재범의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경찰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상의 공백은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격리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데서 야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업무상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경찰의 체포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가해자가 폭력을 행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를 물리적인 상해의 위험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가해자를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사건 신고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하도록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해자를 일단 석방한 후 차후에 경찰서에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영국의 경찰도 1987년 이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포정책을 채택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사건에서 경찰에게 임시조치권을 부여하는 가정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되었다. 지난 2005년 6월 홍미영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2006년 12월까지 우윤근의원, 박명광의원, 이계경의원안 등 4개 법안이 발의되어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2007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개정안들이 폐기됨으로써 경찰의 임시조치권 부여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 있다.⁷⁴⁾

나. 피해자 신변 안전의 위협

현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정폭력특례법) 규정상 응급조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출동한 경찰이 응급조치를 취한 후 현행법 체포 및 긴급체포하기가 곤란하여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철수하게 되었을 때 행위자가 피해여성에게 보복을 가함으로써 피해여성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고, 구속되었던 가해자가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아직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신변안전이 위협을 당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법원이 내린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특정한 범법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현행법상 마땅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⁷⁵⁾

74) 이금형, 앞의 논문, 29-30쪽.

75) 김재민,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개입 현황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법령개선방안”,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열린 포럼』, 경찰청·한국여성외전화연합 주관, 2007, 52쪽.

다. 가정폭력사건의 처리방식을 피해자 의사에 일임하는 데서 야기되는 문제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은 그 입법과정에서 ‘피해자 선택모델’과 ‘강제정책모델’ 간의 절충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⁷⁶⁾ 가해자에 대한 처벌 결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선택 모델’의 입장을 반영하여 피해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가르는 합리적 입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채, 그 결정권을 피해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 제9조는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가정폭력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느냐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느냐에 관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정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만일 피해자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사안이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가급적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게 된다. 이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의 범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폐단의 소지가 생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면접조사에 의하면, 면접대상자들은 가해자로부터 칼, 톱, 도끼, 망치, 벨트, 의자, 병 등으로 구타

76) 서구의 경우에는 지난 20-30년 동안 피해자가 구속, 기소 등 형사절차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과 형사사법 기관이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강제정책 사이를 왔다갔다 했는데, Hoyle과 Sanders(2000)는 이 두 정책의 변화를 ‘피해자 선택모델’(victim choice position)에서 체포우선모델(pro-arrest position)으로의 변화라고 부른다(김은경, 2003, 7쪽). 우리나라 가족폭력 정책에서는 이 두 입장이 서로 절충되어 형사특별절차 및 가사소송특별절차의 성격을 겸비한 ‘가정보호사건’과 ‘가정보호처분’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김은경, 2003, 14쪽). 이러한 절충은 가정폭력특례법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가르는 합리적 입법기준의 부재로 나타난다.

를 당하고 찢리는 폭력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형사처벌하겠다고 말하기 어렵고, 때로는 남편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고소를 하지 못하거나 고소했다가도 취하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유보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큰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본래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⁷⁷⁾

2.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활동 차원

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주체이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냐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이 범죄사건이 되기도 하고, 단순한 가정사의 부부싸움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2003년 서울여성의전화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처리방식과 관련하여, 경찰의 28.6%는 집안일이니 알아서 하라는 반응을 보였고, 그렇게 경찰이 돌아간 뒤에 남편의 60.0%는 다시 폭력을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⁷⁸⁾ 또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5년 연례보고서에서는 경찰의 사건처리방식과 관련하여 43.75%의 피해여성은 “경찰관이 집안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그냥 돌아갔다”고 응답했다.⁷⁹⁾

77) 주명희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 결정을 맡기는 현행 법 규정은 피해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주명희,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여성개발원, 2006).

78) 서울여성의전화, 2003, 14쪽, 20쪽.

경찰들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기본임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하여야 수사가 진행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가정일은 알아서 하라고 말만 하고 돌아가 피해여성을 더욱 심각한 폭력상황에 처하게 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다.⁸⁰⁾ 2003년 실시한 서울여성의전화 연구에 의하면, 경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찰의 28.4%는 피해여성의 신고 후에 한참 후에 출동하였다고 답변했고 5.7%는 아예 출동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표 12>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

| | 검거건수 | 검거인원 | 조치 | | | 가정보호사건의견 송치 | |
|--------|--------|--------|-----|--------|--------|-------------|-------|
| | | | 구속 | 불구속 | 기타(계도) | 건수 | 인원 |
| 2003년 | 16,408 | 17,770 | 496 | 16,787 | 487 | 4,186 | 4,459 |
| 2004년 | 13,770 | 15,208 | 329 | 13,969 | 910 | 2,587 | 2,616 |
| 2005년 | 11,595 | 12,775 | 181 | 11,800 | 794 | 1,881 | 2,022 |
| 2006년 | 11,471 | 12,837 | 113 | 12,011 | 713 | 1,722 | 1,903 |
| 2007.6 | 5,757 | 6,469 | 51 | 6,160 | 258 | 747 | 841 |

자료: 경찰청 국회제출자료

경찰청 2007년 국회제출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기간 동안 경찰의 가정폭력 구속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가정보호사건 송치 건수도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반면, 계도 조치 건수는 2003년 487건에서 2006년 713건으로 증가해 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검거된 가해자들의 대다수가 불구속으로 처리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가해자의 0.9%만이 구속 조치되고, 그 나머지는 불구속 조치되거나 계도 조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경찰이 가정폭력사건 개입시 대체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계도조치를 통해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79)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에서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2005.

80) 이찬진, “가정폭력방지법해설 및 수사절차, 성·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교육, 서울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123쪽.

있다.⁸¹⁾

그밖에도 가정폭력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상의 문제가 지적된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피난처로 입소해야 하는 경우, <1366>과 경찰의 협력체계가 여전히 잘 확립되어 있지 못해서 피해여성을 긴급피난처로 인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⁸²⁾

제3절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피해자 보호대책 개선방안

1. 법·제도 개선 차원

가. 경찰에게 임시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

현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정폭력특례법) 체계와 실제 운용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2차적인 가정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법 운용상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정폭력 현장에서 즉각적인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 없는 데 따른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적인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가해자 체포나 임시조치를 통하여 일정시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가정폭

81) 김재민, 앞의 논문, 2007, 49쪽.

82) 김정숙, “여성위기개입 네트워크 활성화와 1366의 역할에 관한 토론”, 여성긴급전화 1366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98쪽.

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방안으로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현장에서 직접 퇴거명령을 내리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한 권한으로서 경찰에게 긴급조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⁸³⁾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즉시 퇴거 등 격리 혹은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의 임시조치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의 가족폭력 특례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 2007년 상정되었다가 폐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형태의 임시조치 권한 부여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반 피의자의 경우에 영장 없이 현장에서 경찰이 긴급체포하거나 현행 범으로 체포한 후 48시간 내에 영장을 신청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폭력 사범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해자를 선 조치 후 일정 시간 내에 검사나 판사의 승인이나 사후 허가를 얻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⁸⁴⁾

나. 가정폭력 전담인력의 확대 및 전문성 확보

우리나라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위기 개입은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는 데 비중이 두어져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적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각 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 내에 ‘가정폭력전담반’을 설치하여 전국 16개 지방청에서 43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사회적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대처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83) 김재민, 앞의 논문, 2007, 53쪽; 김재민, 앞의 논문, 2006, 28쪽.

84) 이금형, 앞의 논문, 32쪽.

그러나 가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서 일시적 조치가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물리적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담이나 치료, 법률적 조언 등에서 지역사회의 관련기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피해자가 쉼터·상담소·법률구조기관 등의 사회적 지원망에 연결되는 것을 돕고, 더 나아가서는 법률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리와 관련하여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폭력 담당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미시간주의 랜싱 경찰서에서는 가정폭력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텍사스의 오스틴 카운티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팀(Family Violence Team)을 조직하여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⁸⁵⁾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찰이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경찰서에 가정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인력을 확대하고, 확보된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가정폭력 가해자 의무체포제도 점진적 검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의무체포제도 도입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적극적인 경찰의 개입과 가해자의 체포는 가족의 해체를 불러올 수

85) 김재민, “가정폭력에의 효과적 위기개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연구”, 『경찰학연구』, 제6권 3호, 2006, 18-19쪽.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개정도 가정보호에 기반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법률적 전문가들의 반대의견도 상당하다.⁸⁶⁾ 또한 체포강제제도가 추가 폭력발생 저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⁸⁷⁾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 특별히 가부장제의 영향에 놓여 있는 농촌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 다문화가족에서의 결혼이주여성의 지위를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인 경찰의 개입이 점진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는데, 미국에서는 경찰의 체포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사건 발생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하도록 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1987년 이래 적극적인 체포정책을 채택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의무체포제도를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그 실행에 필요한 관련 연구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피해자 지원활동 개선사항

가.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86) 주명희,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체포강제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여성연구』, 제71호, 한국여성개발원, 2006, 9쪽. 반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1) 가정폭력사건을 다른 폭력사건보다 엄중히 처벌해야 할 근거가 없고, 2) 불법 혹은 과잉체포의 우려가 있고, 3) 가정을 파괴한다는 비판이 경찰에게 전가될 수 있고, 4) 현재의 법률체계내에서는 피해자가 원한다면 경찰은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이금형, 2005) 굳이 체포강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법률하에서 체포강제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1) 경찰관에게 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2) 체포에 관한 정확한 지침이 없으며, 3) 두 당사자 모두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피해자, 가해자를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체포강제제도 도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주명희, 앞의 논문, 9-10쪽).

87) 김은경, 앞의 논문, 10-14쪽.

여성가족부가 국정홍보처의 협조를 받아 월드리서치에 의뢰하여 이뤄진 결혼이주여성 대상 전화면접 조사⁸⁸⁾결과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일반국민 10명 중 8명(79.4%)가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들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66.8%),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위해서 예산배정을 늘려야 한다(83.1%)는 견해를 보였다.⁸⁹⁾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안정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일선 파출소 경찰관 대상 기초적 회화교육과 매뉴얼 개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은 지역 파출소 경찰관이 담당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일선 지역 파출소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 피해자인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비교적 영어를 잘 구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러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긴다.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제대로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고, 경찰관은 구제 방안을 제시해 주기 어렵다. 현재 파출소에서 근무

88) 이 조사는 여성가족부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2007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한 것이다.

89)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07.9.5).

하는 경찰관들은 업무 수행에서 영어 활용도가 낮고, 더구나 기타 언어에 대해서는 지식이 전무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에 필요한 간단한 회화 교육이나 매뉴얼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폭행 피해 사실이 있으십니까?”,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범죄 사건을 목격하셨습니까?” 등의 질문과 “예/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는 각국의 언어로 된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⁹⁰⁾

다.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들과의 연계활동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각종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경험이 있는 후에 비교적 쉽게 도움을 청하는 대상은 결혼이주여성 지원단체들이기 쉽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 지원단체들과의 긴밀한 연계하여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한 공조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가정폭력 신고률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4조에서는 학교·의료기관 종사자, 가정폭력·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상담원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신고건수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국내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발생률이 40%를 넘고 있는 것으로

90) 이효민, “다인종·다문화 시대와 경찰활동 변화의 모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9호, 2007, 154쪽.

조사되고 있으며, 심각한 신체적 폭력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국내 가정의 경우 경찰을 통한 가정폭력 접수건수는 지난 2003년 이후 채 2만 건이 되지 않는다. 다문화가족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국내가정에서보다도 높은 가정폭력발생률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 2007년의 경우 다문화가족 가정폭력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건수는 채 100건이 되지 않는다.⁹¹⁾ 이러한 사실은 가정폭력범죄특례법상에 명시된 가정폭력범죄 신고의 의무가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여전히 가정폭력범죄가 범죄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가정내에서의 부부간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궁극적으로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범죄 신고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즉 가정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가정폭력특례법상의 신고의무조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바. 다문화가족에 대한 경찰 지원체계 홍보 및 교육

경기도가족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경기도지역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대상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가정폭력 등 위기시 지원서비스인 여성긴급전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의 15.2%만이 인지하고 있었고, 여성긴급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11.4%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난 1년간 부부싸움 중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

91) 지난 2007년의 경우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관련 검거 건수는 총 82건이고 구속 조치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하며, 올해 2008년의 경우에도 지난 8월까지 검거건수는 39건, 구속조치 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경찰청 비공식 통계자료).

한 적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시 경찰의 개입과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14.6%에 불과했으며, 여성긴급전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는 17.1%에 불과했다.⁹²⁾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해 볼 때, 결혼이주여성을 가정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폭력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이 연구는 경찰이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에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 실태를 분석하였고,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현황을 살피고, 본론적으로 다문화가족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책과 경찰 지원활동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은 일반 국내가정에 비해서 가정폭력의 문제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부장제의 사고틀 속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범죄 피해자 집단으로 존재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과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경찰의 역할에 비춰 볼 때,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별히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초기대응이 가정폭력 범죄의 확

92) 정기선 외,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지원 장단기 계획』,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76쪽.

대를 막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최근 2007년 여성가족부의 가족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반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안정 및 사회통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 및 존중할 수 있는 국민 인식전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결혼이주여성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방안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조사 결과는 경제적 지원이나 법적 장치 마련에 앞서 다문화주의를 인정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외국인인 아닌 한국인으로서 동등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우리사회의 소수집단(Minorities)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 들이라는 인식의 기초 위에서 다문화가족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해소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실과 지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공미혜. 『한국의 가부장적 테러리즘: 아내구타자 교육프로그램』. 하우. 1999.
- 광주발전연구센터. 「외국인주부 실태조사」. 2003.
- 김민정.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정책 효율성 검토”. 『정부의 결혼이민자가족정책 다시보기 토론회 자료집』. 2006.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2006.
- 김성미경.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의 문제와 국가정책”.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성과 여성인권운동의 역할』.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08.
- 김수율. 「가정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아내폭력을 중심으로」. 호남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김애령. 『충남거주 조선족 여성의 결혼가정과 적응에 관한 연구』. 광주여성정책과. 1998.
- 김오남.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김은경.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여성연구』. 통권 65호. 한국여성개발원. 2003.
- 김재민. “경찰의 가정폭력 위기개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현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국민의 자세 토론회 자료집. 서울여성의 전화. 2006.
- 김재민. “가정폭력에의 효과적 위기개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연구”. 『경찰학연구』, 제 6권 제3호, 경찰대학, 2006.
- 김재민.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개입 현황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법령개선방안”.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열린 포럼』. 경찰청·한국여성의전화연합 주관. 2007.
- 김재엽·최선희 외. 『한국가정폭력실태와 행위자교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소. 1999.
- 김정숙. “여성위기개입 네트워크 활성화와 1366의 역할에 관한 토론”. 여성긴급전화

- 1366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김현숙.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유형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7.
- 노하나.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2007.
- 민경자. 『충남 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
- 박선영 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관련 법제 정비방안』. 2007 연구보고서-13-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박수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연구-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지영.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8.5.19.
- 서영주. “강원지역 외국인 주부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외국인 주부 복지증진을 위한 토론회」. 2001.
- 석원정.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 사단법인 인천 여성의 전화 본회 10주년 및 여성주간 기념 이주여성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자료집. 『여성과 이주현실』. 2004.
- 설동훈 외.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6.
- 신란희. 「국제 결혼 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안현주. 「한국남성과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대응-여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양정화.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07.12.3.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07.3.21.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07.9.5.
- 여성가족부.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2008.
-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
- 여성가족부. 『선진국의 가정폭력 방지정책 실무연수 결과보고서』. 2007.
- 위 홈. “국제결혼과 여성성폭력에 관한 정책 제안 원탁토론회”.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2003.
- 윤형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8호.

- 윤형숙.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2004.
- 윤형숙.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여성학회 10월 심포지엄 발표 논문. 2004.
- 이금연.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 「국제결혼과 여성 성폭력에 관한 정책 제안 원탁토론회」.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WeHome. 2003.
- 이금연. “한국이주여성의 지원체계와 문제점”. 『2004 이주여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자료집』. 2004.
- 이금형.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지원체계와 향후 인권보호를 위한 방향”.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대응과 피해자 안전보호를 위한 열린포럼 자료집』. 2007.
- 이삼식 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결혼·출산 형태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이선주. 『국제노동이주와 젠더: 배제와 제한된 포용』. 2006.
- 이성용.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에 관한 고찰-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2007.
- 이윤애. 「결혼으로 이주한 외국인여성의 정착지원방안」. 전국여성단체연합 성과인권위원회. 『전북지역 이주여성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자료』. 2005.
- 이인경. “이주여성의 인권: 어울림사례를 중심으로”. 『부산발전포럼』. 통권 96호(2005. 11·12). 부산발전연구원. 2005.
- 이찬진. “가정폭력방지법해설 및 수사절차. 성·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교육. 서울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 이한동.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과 정신건강-스트레스와 우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 이혜경.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2005.
- 이효민. “다인종·다문화 시대와 경찰활동 변화의 모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9호. 2007.
- 정기선 외.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지원 장단기 계획』.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 주명희.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체포강제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여성연구』 제71호(2006.12). 한국여성개발원. 2006.
- 최근정. “우편주문신부 그 현황과 성매매로서의 의미”. 「국제 성매매근절 운동팀 강연회 자료집」. 2003.
- 탄티튀히엔. 「국제결혼 베트남 이주여성의 현실과 적응-메콩델타지역 농촌여성의 사례

- 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통계청. 『2007 혼인통계결과』. 2008.
- 하 밍 타이.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 한건수·설동훈. 『결혼중개업체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06.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예방지침서』.2003.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에서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2005.
- 허경미·박영주. “가정폭력의 대응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8호.
- 홍기혜.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대석사학위논문. 2000.

책임연구보고서 2008-12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실태와 경찰의 피해자 보호 대책 개선방안

발행일 : 2008년 12월 26일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